

2017.6.19.부터 급여계약통보서 일부 전산등록 사항이 보완됩니다.

○ 주요 전산보완 내용

가. 방문간호 제공 요양요원 치매교육 미이수 전산등록 제한 팝업 안내

- 5등급 수급자 방문간호 급여일정 등록 시 간호사 치매교육이수 여부 확인 전산화면 개발

나.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여 산정가능 횟수 준수 팝업 안내

- 방문요양 60분 20회 제공 가능한 수급자의 21회 이상 급여일정 등록에 대해 급여비용 산정 불가함을 안내

※ 장기요양기관의 자진환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21회 이상 전산등록 가능하나 급여비용 청구·심사 시 산정가능 횟수(20회) 초과로 확인될 경우는 급여비용 청구·심사 제한 발생함을 유의

다.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 준수 전산등록 팝업 안내

---> 2017년 7월 급여계약통보서부터 적용됨

-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가능한 수급자(1~5등급)에 대해 치매교육을 이수 받은 요양요원(가족요양보호사 포함)이 1일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 서비스 전산등록 하도록 안내

※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 기준(120분 이상 180분 미만)을 준수할 경우에 방문요양 60~90분이상 급여비용 산정 가능 (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5항, 제23조1~6항)